



외국의 식품접객업 관리현황 및 부패방지대책

金貞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외국의 식품위생분야 부정부패방지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과 우리와 문화적 관습과 정서가 비슷한 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와 경쟁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식품접객업종 분류 현황과 이를 관리하는 관련 법 및 제도 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업종분류 및 관련 법규

1) 미국

(1) 식품위생법상 업태분류

미국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접객업소의 업종구분은 주법에 의해 바(bar)와 레스토랑(restaurant)으로 구분되어 있다. 바의 경우는 술이나 음료판매를 주종으로 하고, 안주류나 샌드위치와 같은 간단한 음식도 병행하여 판매할 수 있는 업소이며, 레스토랑은 완전한 형태의 식사(full meal)를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술이나 음료를 같이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업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상의 위생업 허가(Health Permit)

미국의 접객업소는 영업허가와와는 별도로 위생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County)의 보건서비스부(Health Service Department)에서 발급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없으나 매년 검사비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년간 검사수수료는 군마다 또는 업소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실례로 오렌지(Orange) 군의 경우 레스토랑의 1년간 수수료는 \$640이다.

(3) 주류통제국의 업태구분

미국의 경우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법에 의한 주류통제국(Alcohol Beverage Control: 주마다 이름은 다르나 기능은 동일)에서 별도의 업종분류를 하고 있다. 주류를 판매하는接客업소의 경우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주류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분류는 캘리포니아주에 해당하는 분류이고 주마다 거의 유사하나 더러 상이한 분류를 가진 주도 있다.

- ① Type 40: (On-Sale Beer) 바 또는 선술집(tavern)에 해당되며 맥주만을 판매해야 하며 샌드위치나 스낵을 같이 판매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주류 소비는 불법이나 출입은 허용된다.
- ② Type 41: (On-Sale Beer and Wine) 레스토랑에 주어지는 허가의 일종으로, 맥주와 포도주만이 판매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출입이 허용된다.
- ③ Type 42: (One-Sale Beer and Wine-Public Premises) 바나 선술집으로 맥주와 포도주만이 판매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 ④ Type 47: (On-Sale General-Eating Places) 레스토랑에서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이다.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하며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⑤ Type 48: (On-Sale General-Public Premises) 바나 나이트클럽에 주어지는 허가로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다. 또한 식사제공이 되지 않아도 된다.
- ⑥ Type 61: (On-Sale Beer-Public Premises) 바나 선술집에 주어지는 허가로 맥주만을 판매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출입은 금지되고 식사제공이 되지 않아도 된다.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맥주와 포도주 판매허가증(Beer and Wine Permit)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수수료는 연 \$168이다. 모든 종류의 주류판매허가증은 인구 40,000명 이상 도시에서는 \$580, 인구 20,000~40,000명 규모의 시에서는 \$412, 그 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360가 소요된다.

(4) 경찰의 풍속관련 업태구분

미국의 경우 식품위생법과 주류통제국 외에도 경찰에서 풍속에 따른 별도의 허가(Entertainment Permit)를 관리하며 업종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주마다 거의 유사한 풍속허가 분류를 갖고 있으며, 다소 주마다 다른 형태도 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찰풍속관련 업태구분이다.

- ① Cafe Entertainment and Shows(CES): 모든 종류의 실황공연을 의미하며 출연하는 사람이 1인 이상인 경우 모두 해당된다.
- ② Adult Cabarets: CES의 일종으로 공연 내용상 성적노출이 심한 경우에 해당된다.
- ③ Dance Hall: 대중이 모여 춤을 추는 업소이다.
- ④ Teenage Dances: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업소(이 경우 시설 및 조도 등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된다)이다.
- ⑤ Hostess Dance Hall: 대중이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나 춤을 출 수 있는 상대(Partner)가 업주에 의해 제공되며, 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다. 주류판매가 금지되며 손님과 춤을 추는 상대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무대바닥에서 36인치 이상의 높이인 곳의 조도는 1 candle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일본

(1) 식품위생법상 업태구분

일본의 식품위생법상 업태구분은 크게 음식점영업과 찻집영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음식점영업은 일반식당, 요리점, 스시집, 소바집, 여관(음식취급), 레스토랑, 카페, 바, 카바레, 도시락가게, 仕出屋(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영업) 등으로 구분된다. 찻집영업은 주류 이외의 음료 또는 다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2) 풍속법상 업태구분

일본도 미국과 같이 경찰에서 풍속에 관련된 업태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주류판매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

- ① 1호 영업(카바레): 카바레 설비를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으며, 손님을 접대하는 접객부가 있고 음식을 주문받는 영업이다.
- ② 2호 영업(음식점, 카페): 요정, 음식점, 카페 등으로 설비를 갖추고 손님에게 유희 또는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 ③ 3호 영업(나이트 클럽): 나이트클럽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고 음식을 주문하는 영업이다.
- ④ 4호 영업(댄스홀): 댄스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영업이다.

- ⑤ 5호 영업(저조도 음식점): 다방, 바, 기타 시설로 손님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곳으로 조명을 10룩스 이하로 유지하는 곳이다.
- ⑥ 6호 영업(칸막이 영업): 다방, 바, 기타 시설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도 내부가 쉽게 보이고, 넓이가 5m² 이하인 칸막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소이다.

3. 싱가포르

(1) 식품위생법상 업태 구분

싱가폴은 술집이든지 레스토랑이든지 모두 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음식점 허가 및 관리는 환경부의 환경보건부(Environmental Health Department of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ingapore)가 담당하고 있다.

- ① 중식(Chineses Cuisine): 우리 나라 일반음식점 중 중식업소에 해당한다.
- ② 동양식(Asian Cuisine): 우리 나라 일반음식점과 같은 형태로 중국식을 제외한 한식, 일식, 태국식, 베트남식 등 다양한 업종이 있다.
- ③ 서양식(Western Cuisine): 우리 나라 레스토랑과 같은 업소이다.
- ④ 카페(Cafe)·커피숍(Coffee shop): 다방으로 차류만 판매하는 업소이다.
- ⑤ 술집(Drinking, Dancing and Karaoke): 우리 나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업태와 비슷하며, 디스코텍(Disco), 가라오케(Karaoke and Lounge), 나이트클럽(Night-club), 호프집(Pub/Fun Pub/KTV) 등과 같은 업소들이 이에 해당된다.

(2) 풍속관련 업태 구분

풍속관련 업소(public entertainment)의 영업허가권은 싱가포르 경찰청(The Singapore Police Force)의 풍속관련업소 허가부서(The Public Entertainment Licensing Unit)에서 업태에 따라 발급된다. 이에 대한 관련법은 공공유흥법(The Public Entertainments Act, Chapter 257)과 공공유흥시행규칙(The Public Entertainments Rules, 1969, Rule 3(1))이다. 업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오락실(Amusement Centres)
- ② 당구장(Billiard Saloons)
- ③ 볼링장(Bowling Alleys)
- ④ 비디오방(Film and Video Shows)
- ⑤ 락카페류(Floor Shows, Live Music, Singing or Dancing in Night Clubs, Karaoke Lounges and Discotheques)

- ⑥ DJ방(Recorded Music in Pubs and Bars)
- ⑦ 사자쇼(Lion Dance)
- ⑧ 마술단(Magic Shows)
- ⑨ 종교집회, 집담회 및 강연회(Religious/Public Talks, Lectures, Discussions and Debates)
- ⑩ 서커스(Circuses)
- ⑪ 각종 전시회(Art/Photograph/Sculpture/Book Exhibitions)
- ⑫ 음악회 및 연극(Concerts/Plays/Dramas and Variety Shows)
- ⑬ 오페라, 인형극, 패션쇼 등(Chinese Operas/sing Song and Puppet Shows, Fashion Shows and Beauty Pageants)
- ⑭ 레슬링과 권투(Wrestling and Boxing Matches)
- ⑮ 전자오락실(Game Machines and Pin-tables)

2.接客업소 관련 규제

1) 미국

(1) 보건위생관련 규제

미국의 모든接客업소는 시 또는 군 보건국에서 위생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1년에 4회(캘리포니아주 오렌지군의 경우이며 군마다 상이함)에 걸쳐 불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불시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건국 검사원이 업주에게 15일 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며, 시정통보 15일 후 불시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지적사항이 누적되고 시정조치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군의 경우 지난 11년간 영업취소는 5건에 불과하지만, 매월 평균 140개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을 정도로 감시가 엄격하다.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바퀴벌레나 쥐가 발견된 경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음식이 상한 것을 알고도 손님에게 제공한 경우 등이다. 업주는 매년 보건국에 검사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 주류통제국관련 규제 및 단속내용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주류에 따라 ABC(Alcohol Beverage Control) 지부에 신청서를 내야하며, ABC는 신청인에 대한 전과조회, 재원조달내역조사,

운영인과 자금조달인과의 동일인 여부조사, 신청지역의 구역(zoning)검토(교회, 학교, 놀이터 주변은 허가하지 않음), 그리고 지역내 다른 주류판매업소의 수 등을 검토한 후 최종 허가결정을 내린다.

주류판매 허가 등은 주류 종류에 따라 허가가격이 상이하며, 모든 주류 허가 등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여야 하고, 갱신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주류 판매업소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이며, 그 다음은 여성접대부(bar girl)에 의한 음주권유행위이다. 여성접대부는 업소에 고용되지 않은 여성들로 고객에게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술을 사줄 것을 고객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한다. 이는 고객의 술소비를 늘려 안전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매춘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단속하고 있다.

미성년자 및 여자접대부에 대한 단속은 신고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속은 경찰의 풍속계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지역내에 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속은 고객으로 위장한 위장단속(decoy program)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단속사항에 따라 영업정지부터 허가취소까지 내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3) 경찰의 풍속관련 규제 및 단속

풍속허가를 받은 후 매년 갱신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단속은 ABC와 합동으로 주류판매에 관련된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업소방문은 1년에 1회 정도로 풍속과만이 출입할 수 있다. L.A.시의 경우에는 특정업소를 1년에 5회 이상 방문시 상부에 관련 보고를 하도록 경찰국 방침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신고나 사고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있다.

2) 일본

(1) 보건위생관련 규제

일본의 경우 구청내의 보건소에서 위생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식점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음식점(레스토랑, 스시집, 소바집 등)을 운영하여도 무방하다. 단, 시설변경 및 업주변경시는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지역(도)마다 유효기간도 다르다. 오사카시의 경우 음식점 위생허가는 5년으로 되어 있으며, 5년간 별점제도를 운영하여 위생허가 갱신시 재

허가 여부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허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지도감독은 보건소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수행하며, 음식점의 경우 연간 12회로 되어 있으나 업주 자율에 맡기는 등 실제 단속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2) 풍속관련 경찰 규제

풍속관련 허가증은 종류에 관계없이 22,500엔의 수수료가 부가되며, 유효기간은 없다. 학교주변 및 주거지역은 허가를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단 허가가 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나 사고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소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3) 싱가포르

(1) 접객업소 허가 관련 규제

풍속업소 허가증은 실내업과 실외업 두 종류가 있는데, 실내업 풍속업소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양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업주대표, 혹은 공동대표 명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위원회』(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건물 승인을 우선 얻어야 하며, 허가발급과와 도시재개발위원회에서 신청서에 대한 허가 검토를 얻은 후, 마지막으로 소방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허가절차는 Planning Act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 외에 업주는 은행에 적당량의 예금액이 있어야 한다. 풍속업소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는 약 8주간이 소요되며, 허가증의 효력기간은 12개월로 1년 후에는 갱신하여야 한다.

실외업 성격의 풍속업소 허가증은 실내업 성격의 풍속업소허가증 취득절차와 비슷한데 신청서 제출시 업소의 야외단지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 허가증을 얻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주이다.

3. 직원감시기능 및 민간참여제도

1) 미국

(1) 보건위생국 감사원에 대한 감시제도 및 민간참여제도

감사원은 일일업무일지(time sheet)를 상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급자는 감사원의 일일업무일지가 실제활동과 동일한지 무작위로 업소방문을 통해 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 자문위원회(Food Sanitation Advisory Council)와 같은 기구를 두어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청취할 기회를 갖는다. 위원회는 지역내 위생업 허가 소유업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년에 6회 정도 보건국(Health Department)에서 회의를 하게 된다. 직원의 활동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을 고용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2) 주류통제국 검사원에 대한 감시제도 및 민간참여제도

ABC 직원들은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며 일지 내용은 15분 간격으로 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원부정에 대한 항의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도기구인 내무부(Internal Affairs Office)에서 조사토록 하고 있다.

주류판매허가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면 ABC는 신청업소에서 반경 600피트 내의 주민들에게 서신으로 사실을 통보하고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3) 경찰서의 감시제도 및 민간참여제도

풍속영업과 관련한 모든 최종결정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풍속위원회(Police Permit Commission)가 하도록 되어 있다. 풍속과 관련하여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최종의견을 풍속위원회에 보낸다.

L.A.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고 시의회의 인준을 받은 5명의 민간인으로 풍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거마비만을 받는 무보수 직책이다. 풍속위원회는 허가뿐만 아니라 각종 단속에 대한 처벌의 최종결정권도 갖고 있다.

2) 일본

(1) 보건위생관련 직원감시제도 및 민간참여

별도의 직원 감시제도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위생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참여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2) 풍속관련 직원감시제도 및 민간참여

경찰공무원의 감시는 보건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찰내 감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풍속과 관련한 허가 및 행정처분의 최종결정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안위원회가 담당하고, 경찰은 자료 및 의견만을 제시할 뿐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